

무배당 건강인우대특약
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조 [목적]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

제 3조 [계약 전 알릴 의무]

제 4조 [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]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5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제 6조 [피보험자의 가입자격]

제 7조 [흡연상태 변경통지]

제 8조 [흡연상태 변경의 효과]

제 9조 [특약의 감액]

제4관 보험료의 납입

제10조 [보험료의 적용]

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11조 [해약환급금]

제6관 기타사항

제12조 [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]

무배당 건강인우대특약
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 사이에 피보험자가 우량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우량체로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가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나. 보험증권 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
다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2.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

해약환급금 :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
3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
보험기간 :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4. 보험료 관련 용어

가. 표준체 보험료 : 표준체에 적용하는 보험료로써, 이 특약을 적용하기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. ‘표준체’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·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.

나. 우량체 보험료 : 우량체에 적용하는 보험료로써, 이 특약의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(이하 “산출방법서”라 합니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. ‘우량체’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제6조(피보험자의 가입자격)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.

용어해설

[해지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[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]

피보험자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제6조(피보험자의 가입자격)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망률

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

제 3조 [계약 전 알릴 의무]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) “건강체 할인 충족여부 확인서”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제 4조 [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]

-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(계약 전 알릴 의무)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표준체 보험료에서 할인된 우량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“우량체보험료”의 “표준체보험료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고 우량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5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-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(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의 승낙을 얻은 자로 합니다.
- ③ 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우량체 보험료를 적용합니다.
- ④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.

제 6조 [피보험자의 가입자격]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제2호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.

1.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. 이 특약의 가입시점으로부터 직전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(전자담배 포함)로 사용(이하 “흡연”이라 합니다)하지 않은 자

- 나. 최대혈압치(수축기)가 140mmHg 미만이고, 최저혈압치(이완기)가 90mmHg미만인 자
- 다. BMI(Body Mass Index)수치(Kg/m2)가 16.5 이상 26.4 이하인 자
- 2.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‘표준하체인수특약’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(‘표준하체인수특약’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는 ‘표준하체인수특약’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)
 - 나.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

제 7조 [흡연상태 변경통지]
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 용어해설
<p>[지체 없이]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.</p>

제 8조 [흡연상태 변경의 효과]

- ① 회사는 제7조(흡연상태 변경통지)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(이하 “정산차액”이라 합니다)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, 계약자는 우량체보험료와 동일한 기준(보험기간, 납입기간,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)으로 산출된 표준체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, 이 특약은 장래에 한하여 해지됩니다. 다만,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.
- ② 계약자가 제1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우량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.
-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(흡연상태 변경통지)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④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(피보험자의 가입자격)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5조(특약의 체결 및 효력) 제3항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, 보험료 변동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.

용어해설

[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]

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제 9조 [특약의 감액]

- ①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.
- ② 감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며 감액된 이후 납입해당분부터 할인 전 주계약의 보험료로 변경됩니다.

제4관 보험료의 납입

제10조 [보험료의 적용]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우량채 보험료를 적용합니다.

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11조 [해약환급금]

제9조(특약의 감액)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주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.

제6관 기타사항

제12조 [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]

-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-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.